
第56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生活環境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8月31日(月) 午前10時

場所 生活環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改正要求에 관한請願의件
-

審査된案件

○ 報告事項 ... 1面

1.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3面
 2.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改正要求에 관한請願의件(崔浩 議員 紹介) ... 9面
-

(10時 48分 開議)

○委員長代理 崔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生活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報告事項

○委員長代理 崔浩; 專門委員室에서 나오셔 가지고 報告事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植;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室 李俊植

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處理할 案件을 報告드리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으로 1992年 6月 25日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이 1992年 7月 1日 議長으로부터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기에 報告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으로 1992年 8月 17日 松坡區 文井洞 150番地 웨미리아파트 209棟 104號 김용영 外 1人으로부터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의 改正을 要求하는 請願書가 接受되어 1992年 8月 17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기에 報告합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浩;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生活環境委員會에서 處理될 案件을 上程하기 前에 委員長님을 代身해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生活環境委員會 條例案件 處理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産業經濟局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님이 海外出張에 계시므로 本委員이 幹事로서 委員長을 代身 司會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處理할 案件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께서는 신중히 檢討하신 後 議決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會議가 원만히 進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執行部 關係公務員께서도 우리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시는 事項을 성실하게 答辯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以上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0時 51分)

○委員長代理 崔浩;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提案者이신 서울特別市長을 代身하여 産業經濟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第56回 市議會 臨時會에 臨하여 저희 産業經濟局 所管의 條例中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說明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市는 농수산물의 流通構造를 개선하고 價格安定을 위하여 1985年 6月 19日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을 開場 運營하고 있으며,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法律 第12條 第3項과 地方公企業法 第49條第1項에 의거하여 서울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를 1984年 4月 10日에 設立하여 本 都賣市場의 施設管理와 去來秩序維持, 流通從事者指導 등 도매시장의 管理에 관한 業務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의 기본적인 業務를 定하기 위하여 農本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를 1984年 4月 25日 制定, 지금까지 運營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1991年 5月 31日字로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의 母法인 地方公企業法에서 定하고 있는 地方公社設

立認可權者가 國務總理에서 內務部長官으로 變更 改正됨에 따라 同 條例中 關聯規定 一部를 改正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改正된 主要內容은 同 條例 第3條第2項에서 定한 支社設置承認, 第5條第2項에서 定한 定款變更認可, 第8條第1項에서 定한 社長任免의 事前承認, 第22條第1項에 定한 社債發行 및 資金의 長期借入, 外國借款導入의 事前承認 等 4個 條項으로 各 條項의 承認權者를 國務總理에서 內務部長官으로 變更하는 단순한 字句修正 事項임을 말씀드립니다.

母法改正에 따른 條例 字句修正임을 감안해서 原案대로 通過 處理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浩; 수고했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成泰辰; 專門委員 成泰辰입니다.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件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地方公企業法 第49條第3項 公社의 設立認可權者를 國務總理에서 內務部長官으로 改正, 그러니까 第49條第3項의 改正으로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中 關聯規定의 一部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으로 本 專門委員이 檢討한 바에 의하면 地方公企業法 第29條, 그러니까 適用範圍를 말합니다. 第2條第2項 및 同法施行令 第2條第2項第1號에 의하면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는 地方自治法 第104條第2項 및 同法 第1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公社로써 地方公企業法 第49條第3項에 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

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認可를 받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特別市行政特例에 관한法律 第3條第2項第2號 條例上의 特例의 規定에 의하면 서울特別市가 地方公企業이 아닌 地方公社 및 地方公團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地方自治法 第104條第2項과 同法 第1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要하지 아니 한다는 例外規定이 있기 때문에 本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再檢討한 後 다음과 같이 改正되어야 한다고 思料됩니다.

條例 第3條第2項에서 公社는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必要한 곳에 支社를 둘 수 있다를 市長의 承認을 얻어 必要한 곳엔 支社를 둘 수 있다로, 條例 第3條第2項에서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의 承認을 거쳐 國務總理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는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市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第8條第1項에서 社長은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市長이 任命하고를 社長은 市長이 任命하고로 改正하고, 第22條第1項 公社는 市長의 承認을 얻어 社債를 發行하거나 必要한 資金의 長期借入이나 外國借款을 導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市長은 미리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중 이 경우에 市長은 미리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는 部分을 削除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浩; 以上으로 産業經濟局長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事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本 條例中 改正案件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께서 意見이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局 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元局 委員; 李元局 委員입니다. 産業經濟局長께서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는 地方公企業法에 의거해서 設立된 公社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農安法의 第12條에 보면 農水産物都賣市場의 開設者는 農水産物都賣市場 事業을 위하여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를 設立할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地方公企業法 第49條를 보면 設立權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2項의 條例에 公社의 定款을 첨부하여 당초에는 國務總理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91年 5月 31日字에 內務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都賣市場管理公社가 設立母法이 地方公企業法인 이상 地方公企業法の 改正에 의해서 設立認可權者가 變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關聯된 條項을 改正해야 된다고 本人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元局 委員; 그러면 專門委員의 檢討報告하고는 조금 차이가 意見を 달리하고 있고 그러면 原案대로 우리 産業經濟局長께서는.....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 第1條를 보면 이 條例는 地方公企業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를 設立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設立根據가 되는 條項이 地方公企業法 第49條인 이상 여기에 의해서 그 당시 地方公企業法の 設立認可權者가 國務總理였었기 때문에 國務總理 認可를 받아서 設立이 되었습니다. 그 認

可權者가 昨年 5月 31日 國務總理에서 內務部長官으로 變更 되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國務總理로 되어 있는 關聯條項을 전부 內務部長官으로 變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元局 委員; 알겠습니다.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관하여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와 다소 見解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울市가 管理公社設置條例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은 地方自治制 실시로 인한 地方公企業法 改正으로 關聯下位법인 條例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市가 提出한 管理公社設置條例改正案은 地方公企業法 및 서울市行政特例에 관한 法에 違背되는 條項이 本委員이 알기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專門委員이 주장하고 있는 管理公社承認權을 內務部長官이 아닌 서울市長이 갖는 것은 關聯法에 대한 면밀한 檢討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무리한 法條項 解釋으로 현재의 法論理上 妥當성이 없지 않느냐, 서울市行政에 관한 特例法 第3條에 明示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專門委員이 提示하고 있는 地方公企業이 아닌 地方公社 및 公團의 設立은 內務部長官의 承認이 필요 없이 서울市長의 承認만으로 可能하다는 論理는 현재의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서울市行政特例에 관한 法施行令 第2條 直屬機關의 범위 내에 의하면,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요하지 않는 直屬機關은 4級 또는 4級 相當 以下の 地方公務員을 長으로 하

는 直屬機關만이 該當된다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울特別市管理公社가 1級 相當의 長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고 九里市管理公社는 4級 相當 以下の 長은 京畿道知事の 承認을 얻는 것이 妥當하지 않느냐, 本委員의 해석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관하여는 本委員이 판단하기로는 단지 한 번 충분한 檢討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條例改正案을 留保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浩; 네, 李元局 委員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현재 李元局 委員께서는 本 案件에 대해서 留保를 하자는 動議案을 提案했습니다. 다른 委員님들께서 그 部分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質疑하실 분이 있으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委員님들께서 質疑가 없으시면 李元局 委員이 提案한 것이 議會에서 留保가 된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니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申龍吉 委員; 李元局 委員에 再請합니다.

○委員長代理 崔浩; 그러면 申龍吉 委員도 留保를 하는데 再請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委員들 없습니까?

質疑 더 없으십니까? 質疑 없으시면 李元局 委員이 다음 會期로 留保하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음 會期로 留保하자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李元局 委員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다음 會期로 留保할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崔浩 幹事, 李基烈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李基烈; 지금까지 司會를 보신 崔浩 委員께서 請願 紹介 委員이기 때문에 역시 幹事를 맡고 있는 本委員이 委員長을 대신해서 司會를 보게 되었습니다.

2.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改正要求에 관한 請願의件
(崔浩 議員 紹介)

(11時 09分)

○委員長代理 李基烈;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인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改正要求에 관한 請願意見의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崔浩 委員 나오셔서 本 請願에 대한 趣旨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浩 委員; 同僚委員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崔浩 委員입니다.

1992年 8月 17日 瑞草區 良才洞 223番地에 所在한 韓國糧穀流通(株) 仲買人組合長 김용명 외 1人으로부터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 中 不合理한 部分에 대한 改正을 要求하는 청원이 있어, 本 請願을 紹介한 委員으로서 趣旨說明을 드리고자 합니다.

本 청원의 主要內容 및 同條例의 改正必要性을 말씀드리자면,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買市場條例 第5條第1號의 規定(糧穀部類에 대한 月 最低 去來基準)이 지난 92年 4月 22日 開會된 第54回 臨時會때 月 最低 去來基準을 500萬원에서 600

가마/80kg로 改正되어 현재 施行 中에 있으나, 糧穀都賣市場 仲買人 組合員들의 處地로 볼 때는 너무 높게 策定되어 비현실적이므로 理 基準을 400가마/80kg로 下向調整하여 同條例를 改正해달라는 內容으로써, 그간 수차에 걸쳐 請願人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양재동所在 糧穀都賣市場을 방문하여 現地 사정을 살펴본 結果, 糧穀都賣市場의 地理적 여건이 良才洞 中心地에서도 먼 변두리에 位置하여 交通이 불편하고 政府의 糧穀流通直去來 장려정책과 양곡消費量 減少추세로 都賣市場 경기가 침체되어 조합원 中 月 最低 去來基準(600가마)에도 미치지 못하는 仲買人이 속출하여 同 條例 第4條 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거 各 部類別 월간 去來金額이 계속하여 3個月 以上 第5條에서 規定한 基準 600가마/80kg에 미달하는 경우 仲買業의 許可가 취소되는 仲買人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仲買人 組合員 中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糧穀都賣市場을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同條例 第5條第1號의 糧穀部類의 基準을 현재 施行 中인 600가마/80kg에서 400가마/80kg로 改正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本 請願이 處理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請願紹介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崔浩 委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請願紹介 委員인 崔浩 委員님의 趣旨說明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成泰辰; 專門委員 成泰辰입니다.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改正要求에 관한 請願件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年 8月 17日字로 議長이 同 委員會에 回附한 서울特別市 서초구 양재동 223番地(株)韓國糧穀流通 仲買人組合長 김용영 外 1人의 請願人이 提出하고, 生活環境委員會 崔浩 委員이 紹介한 서울特別市 農水産物都賣市場 條例改正 要求에 관한 청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 請願內容을 檢討한 바 請願人은 현재의 月 最低去來基準 600가마/80kg를 400가마/80kg로 下向調整하여 條例를 改正해 줄 것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이는 '92年 4月 22日 第54回 臨時會 때 從前 500萬원에서 600가마/80kg로 대폭 上向調整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대폭조정은 1985年 9月 10日 改正 이후 6年 7個月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나름대로의 上向調整은 수공이 갑니다만 현 실정에 꼭 맞는 上向調整이 아닌 점이 지난 4個月 동안 施行하는 過程에서 지나친 점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請願人의 要請대로 400가마/80kg로 下向調整했을 경우, 糧穀消費量의 감소추세로 인한 糧穀仲買人의 仲買業 포기 경향을 줄이며 零細仲買人들을 구제하는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專門委員이 직접 現地를 訪問하여 關係人들의 意見을 聽取, 綜合해 본 結果 紹介委員의 취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本 請願趣旨로 보아 該當 條例의 關聯內容은 改正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思料되므로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신중히 檢討하신 후 處理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本 請願書의 處理에 대한 좋은 意見이 있으시면 委員님들께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李元局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元局 委員; 李元局 委員입니다. 혹시 청원인 김용영 組合長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러시면 本委員이 몇 가지 質問事項이 있는데요, 發言臺에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發言臺에 서 주십시오.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請願人 李榮珪 組合長입니다.

○李元局 委員; 김용영 組合長님이 아니시고 李榮珪 組合長님이십니까?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네.

○李元局 委員; 몇 가지만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本件에 대해서 서울市 資料에 의하면 仲買人 1人當 月去來 平均數量이 90年度에는 900가마로 나와 있습니다. 91年度에는 775가마로 나와 있고 今年度 1월부터 7月末 현재까지는 643가마로 이렇게 1人當 平均 去來量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請願人께서는 이렇게 平均적으로 서울市 資料에만 今年度 7月末까지도 643가마를 去來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600가마에서 400가마로 下向調整해 달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糧穀, 혹은 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市 資料는 우리 糧穀都賣市場에서 雜穀을 入札하고 있습니다. 農開公을 통해 雜穀을 入札하고 있는데 그 雜穀을 포함한 그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建議를 올린 것은 米穀部分에 대해서, 쌀部分에 대해서만 올린 것입니다.

○李元局 委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李 組合長님께서 서울市の 資料는 쌀만 아니고 雜穀까지 포함해서 個人 1人當 月平均 去來額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쌀만 지금 현재 入荷되는 量이 1日 몇 가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指定都賣人이 2個 있죠? 전체 仲買人은 2個 指定都賣人에선 163名이죠? 그러면 163名, 2個 指定都賣人에서 1日 入荷되는 쌀만의 量이 얼마나 됩니까? 入荷量이 대충.....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현재는 점차적으로 減少趨勢가 되어 가지고 오늘 현재로 兩個會社가 約 3,000에서 4,000, 平均한 4,000未滿으로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님니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元局 委員; 上限線이 4,000가마가 入荷가 되고 下限線이 3,000가마다, 그러면 3,000가마로 봤을 때 일단 1日 入荷量이 3,000가마다 했을 때 163名이 25日間을 取扱한다고 봤을 때 1人當 約 18가마가 1日 取扱量이 되겠네요? 그것을 25日間으로 했을 때는 450가마. 1日 去來量이 45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量을 取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하에 取扱하는 量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價格競爭에 우리 仲買人 163名이 상당히 努力을 하고 있겠네요? 한 푼이라도 더 주어야 자기 物量을 確保하기 위해서. 入荷量은 적지 않습니까? 月 去來量은 600가마로 最低基準이 되어 있는데 지금 平均 최저 去來量을 보았을 때 1人當 入荷量이 650가마씩 1人當 안 되기 때문에 그 仲買人取消가 되지 않기 위해서 競賣價格競爭에서 엄청난 問題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仲買人 탈락이 되지 않으려고 그 600가마 최저基準量

을 채우려고 상당한 고심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네요?

○大韓糧穀仲買小組長 李榮珪; 그 答辯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同 市場은 農安法 第17條와 第38條의 規定에 의해서 都賣指定法人이 受託行爲를 해야 됩니다. 物件을 끌어와야 되고 仲買人은 分散機能을 해야 됩니다. 仲買를 해야 되는데 현재 都賣會社가 말하자면 그 受託行爲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仲買人들이 記錄上場을 하고 있습니다. 物件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나 현재 政府의 施策에 의해서 賣渡를 말하자면 消費者에서 生産者로 連結시키고 또 소포장을 권장해서 우리 市場을 擔當할 경우 會社의 上場料라든가 또 우리 會社에서 말하자면 市場에서 都賣商人이나 小賣商까지 가는 운반비 또는 勞組의 上·下車費, 이런 것으로 봐서 約 3,000원 정도 이런 賣渡와의 價格差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市場이 현재 매일 말하자면 계속 악화되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600가마로 上向調整을 할 적에 많은 零細商人들이 被害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請願을 한 것입니다.

○李元局 委員; 지금 記錄上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指定都賣人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指定都賣人들이 쌀을 入荷할 수 있는 그러한 能力確保가 안 돼있기 때문에 仲買人들 스스로 集荷活動을 해서 직접 販賣를 하고 그 販賣金額을 記錄으로 해서 指定都賣人에다 실적을 올린다고 말씀입니까?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네.

○李元局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李 組合長님께서 600가마에서 400가마로 下向調整

해 달라 하는데 거기에 根本趣旨는 무엇입니까?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지금 平均치수를 볼 적에는 600가마 以上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163名の 중매인 中에는 零細商人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市場이 아닌 말로 지금 危機에 처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는 서울市의 배려로 인해서 農協이 管理를 해 왔는데 앞으로 農水産物市場管理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市條例에 의해서 條例規定을 지키지 않을 적에, 말하자면 法の 근거에 의해서 仲買人을 許可를 取消시킨다든가 이런 問題가 惹起된다면 우리 仲買人들이 여러모로 복잡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現實에 立脚한 그러한 것을 要求하는 것입니다.

○李元局 委員; 그러면 條例에는 最低去來數量은 3個月 連續 600가마가 未達되었을 때 仲買人의 取消對象者가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다고 보면 2個月은 600가마 未滿을 實績을 올려도 되고 3個月 中에 1個月만 600가마로 최저去來金額을 유지하게 되면 仲買人取消에는 對象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네.

○李元局 委員; 그러면 지금 서울市는 말입니다. 앞서 本委員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資料가 나와 있습니다. 160名이 年度別로 今年度 7月末까지도 643가마로 仲買人 個人의 去來 實績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李 組合長께서는 이 實績을 雜穀을 포함해서 調査한 內容이고 쌀만은 500가마도 안 된다. 앞서 本委員이 말씀드린 대로 3,000가마 1日 入荷量으로 봤을 때 163名에 대해서는 월간 450가마가 안 된다, 그 資料를 本委員한테 接受시켜줄 수 있습니까?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현재는 없습니다.

○李元局 委員; 현재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다음에라도 본위원한테, 아니면 우리 紹介委員인 崔浩 委員님한테라도 갖다드릴 수 있습니까?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네.

○李元局 委員; 쌀만 아무래도 163名을 600가마로 하려다 보니까 入荷量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今年度, 昨年度 것, 90年度까지 본 委員이 要求하는 것은 會計 1人當 取扱하는 A는 2,000가마 해 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C, D는 500가마 未滿해 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月別. 그것을 본위원한테 接受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答辯에 응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난 第54回 臨時會에서 改正을 議決한 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를 현재 施行된지 불과 4個月밖에 되지 않아서 現 條例보다 下向調整하여 改正한다는 것은 條例를 提出한 서울시나 原案대로 條例를 審議議決한 市議會의 公信力 및 機關能力에 상당히 損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言論에서도 條例改正要求請願에 관하여 問題點을 報道하고 있어서 請願要求대로 條例를 시급히 改正 時에는 市議會가 公益보다는 糧穀仲買人들의 기득권 保護에 치우친 請願審査를 한다는 불필요한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條例에 대하여 不當하고 一방적인 被害를 당하는 市民들이 있다면 市議會의 公信力 및 機關能力에 대한 損失보다도 우선적으로 잘못된 條例를 신속하고 合理的으로 整備하는 것이 당연한 市議會의 機關役割입니다. 그러나 지금 審議되고 있는 條例改正要求請願은 본위원이 檢討해 본 바에 의하면 그다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 請願事由도 다소 不合理한 면이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檢討를 한 후 處理를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條例를 改正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條例改正 심의 시에 關聯 이해당사자인 오늘 會席해 주신 仲買人代表와 指定都賣人代表, 서울시의 意見을 어떠한 형태로든, 모임을 事前에 청취하여 반영하는 것이 그 節次가 필요하다고 本委員은 생각이 되기에 다음 會期로 留保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李元局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元局 委員님이 다음 기회로 留保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討論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申龍吉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申龍吉 委員; 申龍吉 委員입니다. 먼저 아까 수고해 주신 李榮珪 組合長님, 發言臺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事務室은 서울시에서 提供해 주는 事務室을 無料로 使用하고 있습니까?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使用管理費만 내고 있습니다.

○申龍吉 委員; 月 平均 얼마나 管理費를 냅니까?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管理費가 현재 1人當 每月 틀리는데 約 10萬원 内外로 보면 되겠습니다.

○申龍吉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160 몇 명에 대한 사무실에 전화는 가설되어 있지요? 전화하고 여직원들은.....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여직원은 거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을 제하고는 없습니다.

○申龍吉 委員; 네. 그러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請願

하는 취지가 당초에는 54回 臨時會 4月 22日 이 改正을 했습니다만 500가마를 甘受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00가마로 引上調整을 한 事項이지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가마당 여러분들은 차액을 얼마 봅니까?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지금 여기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현재 農村狀況이나 쌀의 狀況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쌀이라는 것은 거의가 價格이 農村에서 決定이 됩니다, 地方에서. 요즘은 전화연락도 되고 전부가 매스컴이 빨라가지고 農村에서 決定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떼기를 1,000원을 뺍니다. 1,000원을 떼어서 上場料 등 上·下車料, 이것을 하게 되면 불과 500원 內를 우리가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申龍吉 委員; 네, 전적으로 組合長님의 얘기를 들어 봅니다. 그러면 500가마를 했을 경우 純收入이 25萬원입니다. 맞지요?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네.

○申龍吉 委員; 그러면 25萬원. 또 하나 여러분들이 場外로 나가는 가마니가 있지요? 場外. 기타 여기 500가마는 市에서 指定하는 가마니數고 기타 地域으로, 기타 예를 들어서 도저히 25萬원 收入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전화비 내고 管理費내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깊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場外로 나가지 않습니까?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없습니다.

○申龍吉 委員; 場外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25萬원 가지고 어떻게 삼니까?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그런 質問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糧穀市場의 추세를 보면 현재 2·3年 동안에 우

리 仲買人들이 많이 떠난 사람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後繼者가 없습니다. 우리 糧穀仲買人들이 龍山에서부터 政府의 糧穀政策에 많은 호응을 해 가면서 왔습니다만 糧穀政策이 이렇게 發展되고 需要와 供給者의 말하자면 폭을 줄이기 위해서 政府의 노력에 의해서 糧穀市場을 떠난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들이 零細商人들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資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期待心理속에서 政府가 이러한 막대한 市場을 이렇게 많은 돈을 投資해서 지어 놓고 언젠가는 우리를 살려주겠지, 이렇게 버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期待心理속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申龍吉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 臨時會 中에서도 심지어 本委員은 알뜰市場 및 直去來하는 것을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쌀만은 제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에 따라서 쌀은 아무데도 이제 市場이나 함부로 直去來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저 역시 대중이 쌀의 귀중성을 저희들이 인식한 나머지 그러한 發言도 한 委員입니다만 이것은 말이죠 定式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4月 22日 條例가 改正되었으므로 우선 제가 알기로는 아까 李元局 委員께서는 연속 3個月 계속 미만일 경우에는 許可取消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 일종의 行政罰이라는 우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회에 當局에서는 執行部에서는 이러한 隘路事項이 있다는 것을 깊이 아시고 일단은 저 역시 李元局 委員에 再請하면서 다음 기회로 留保할 것을 再請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申龍吉 委員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丁鎭 委員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丁鎭 委員; 저는 見解를 좀 달리 합니다. 물론 85年度 9月

10日 改正 이후 현재까지 금년도 4月 22日 開會된 第54回 臨時會 때 500萬원에서 600가마로, 이것은 너무 策定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00萬원에서 600가마로. 600萬원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600가마로 額數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策定이 너무, 그 당시 우리 生活環境 委員들도 너무 경험이 없었고 모르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는가 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紹介人도 있고 또한 請願한 분도 계시고 또한 그 동안 運營을 해 보다가 이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은 請願紹介가 들어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策定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丁鎭 委員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丁鎭 委員님께서서는 原案대로 通過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討論하실 委員님 계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浩 委員님.....

○崔浩 委員; 먼저 私的으로는 産業經濟局長님과 얘기했었습니다만 먼저 이 案件에 따라서 500萬원에서 600가마로..... 産業經濟局長님께 묻겠습니다. 갑자기 약 1,200% 정도 上向 調整하게 된 內譯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事전에 실지 商人들과 對話를 어느 정도 나누어서 그 노출된 것이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500萬원에서 600가마 하니까 그것이 金額上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500萬원은 85年 9月 10日 糧穀都賣市場이 開設되기도 전의 基準量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500萬원이면 아마 그

당시 쌀 한 가마에 2,000원. 그때 慣行으로 아마 합당한 金額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것을 8年, 7年 지난 다음에 600가마라고 하는 것은 500萬원에 10%, 20% 올리자는 次元보다 그 동안의 去來慣行을 죽 봤습니다. 糧穀都賣市場의 慣行을..... 아까 李元局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月 平均 去來量이 90年度에는 1,000가마, 그 다음에 91年度에 가서 850가마,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600가마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보면 600가마를 淸급하기가 힘든 仲買人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平均적으로 봐서 600가마를 지금 上向運營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定한 것이고, 또 糧穀都賣市場을 저희 市로서는 活性化를 해야 될 그러한 市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너무 最低去來基準을 너무 낮게 策定했을 때는 活性化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活性化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前提條件이 필요할 것입니다. 指定都賣人들이 收合能力을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仲買人들이 物量을 더 많이 淸급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너무 현실보다 낮게 策定했을 때는 都賣市場을 活性化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600가마를 했던 것입니다. 600가마를 運營하는 과정에서 仲買人들이 열심히 이것을 그 物量을 確保해서 去來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中매인들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事由로 해서 도저히 이것을 그런 物量을 淸급할 수 없다고 하는 객관적인 事由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去來基準을 引下調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이 條例가 改正된지 아주 일천하고 또 현재의 去來관행으로 봐서 月 平均 6백 4·50가마는 淸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運營을

해 보면서 또 仲買人들이 이러한 物量을 취급하는데 仲買人 자신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事由가 있는지 신중히 檢討해서 그러한 事由가 있으면 補完해 주고 또 補完이 불가능할 때 그때 引下調整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당분간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意見입니다.

○崔浩 委員; 아니, 事前에 이것을 500萬원에서 600가마로 올릴 당시에 關係公務員이 실제 商人들하고 對話한 기록이 있습니까?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네, 있습니다.

○崔浩 委員; 그러면 그 記錄이 어떻게 된 거지요?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당초에 그 당시에 이것을 論議할 때는 사실은 論議가 시작된 지가 한 1年 가까이 됩니다만 그때는 750내지 800가마 정도해서 去來基準을 정하는 것을 論議가 되어 왔었습니다. 仲買人들이 그러한 論議에 대해서 반대가 또 심했고 작년엔 우리가 去來量을 봤을 때 750가마 내지 800가마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600가마 정도로 이것을 調整해 주면.....

○崔浩 委員; 좋은데요. 局長님 記錄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事業이거든요. 이것은 生存權에 관한 問題입니다. 零細商人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따라서 몇 차에 걸쳐서 어떠한 사람들하고 會議을 했든지 그 記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記錄은 우리 擔當係長으로 하여금 答辯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이러한 것을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仲買人組合長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덮어놓고 400가마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600가마를 취급할 수 있는 制度上의 未備點이 있으면 취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改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仲買人組合長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한 가마당 마진이 500원, 600가마를 취급해 봤자 한 달에 30萬원인데 30萬원의 收入을 바라고서 仲買人 生活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전혀 收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糧穀 이외에 다른 業種을 해서 다른 事業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쪽 糧穀仲買業 쪽에 대한 자기노력은 그 만큼 半減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崔浩 委員; 局長님. 그 정도로 됐습니다. 擔當係長이 있다면 과장이든 係長이든 記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糧政係長 兪巖;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技術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수차에 걸쳐서 우리 課에 兩 仲買人 代表하고 그 다음에 指定都賣人이 찾아와 가지고 같이 仲買人끼리 얘기하고 兩 都賣人하고 같이 合席은 안하고 따로 따로 利害關係가 틀리기 때문에 合席하면 물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崔浩 委員; 그러면 公務員들이 卓上空論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事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市 公務員이 現場에 實務者들하고 實務 利害關係가 있는 분들과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 올린다는 것도 중요한데 政府 物價 올리는 것도 10% 올릴 때 오만 것을 다 하는데 또 한 마디 얘기해서 85年 9月 10日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손을 안대고 있다 그것은 職務遺棄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1,200% 정도로 올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실지 163名이라는 商人이 있다고. 그 商人代表 최소한도 10名이면 10名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會議 정도는 했어야죠.

○糧政係長 吳巖; 崔浩 委員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今年 8月 3日부터 管理公社로 移管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가마니를 調整한 것입니다.

○崔浩 委員; 그런데 활성화라는 단어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 무엇을 활성화시키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나는 근본적으로 400가마 자체를 反對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자율적으로 좀 놔둬라. 왜 市에서 그것을 行政的으로 묶어 놓느냐 이거야. 자율적으로 놔두고 자기네들이 팔면 파는 것만큼 申告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事業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國稅廳에서 말하자면 認定課稅를 얼마를 매긴다, 너희가 안 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物件 파는 것을 말이지 얼마 이하면 안 된다, 그 활성화 단어와 그것이 안 맞다고 나는 본다. 따라서 結論은 어떻게 했든 지금 충분한 商人들과의 대화가 없었죠? 現場에 나가 가지고 會議을 한다든지 그것은 없었죠?

○糧政係長 吳巖; 商人들과 대화는 했습니다. 대화는 있었습니다.

○崔浩 委員; 아니, 한두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1,200% 정도 업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會議은 없었죠? 그렇게 해 가지고 商人代表를 예를 들어서 163名 中에서 한 10名이라도 오시라고 했든지 해 가지고 公法的인 會議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죠?

아까 없었다고 얘기 하셨죠?

○糧政係長 兪巖;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追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崔浩 委員님께서서는 자꾸 1,200%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7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하게 된 理由는 3年 동안 無料로 使用했다가 지금 公社로 移管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료니 기타 納付할 것이 많습니다. 해서 이번에 500萬원에서 600가마니로 최소한으로 調整한 것입니다.

○崔浩 委員; 그러니까 調整한 내용을 지금 700% 좋아요. 750%로 하는데 700%, 600%가 되더라도 문제는 地方自治制가 됐든 뭐 市公務員이 됐든 간에 國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存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準하고 있는 商人들과의 對話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合意點을 導出을 해 가지고 600가마를 하든 500가마를 하든, 1,000가마를 하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지금 말씀대로 750% 정도나 업을 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그리고 擔當係長 잠깐 서 계세요. 지금 오셔서 말씀하실 적에 무슨 과, 무슨 係長, 아무개입니다 하고 밝혀야 速記錄에 오르고 하는데 그것이 미진했으니까 다시 이제껏 이야기한 擔當係長은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糧政係長 兪巖; 네, 잘못했습니다. 糧政課 糧政係長 兪巖입니다. 課長이 지금 空席中이라서 糧政係長이 代理로 答辯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네, 수고하셨습니다.

○崔浩 委員; 係長님 들어가시고 局長님. 뭐하실 말씀.....

○委員長代理 李基烈; 네, 局長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지금 500萬원이 600가마가 되었다, 그 基準이 뭐냐, 基準으로써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재의 去來狀態라고 봅니다. 去來狀態가 평균 昨年에 750, 800가마를 취급했으니까 저희들이 600가마로 한 것이지 去來狀態가 예를 들어서 400가마 정도 취급되고 있는데 600가마로 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이 基準이 500萬원에서 600가마니까 엄청나게 金額上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85年 당시에 500萬원이니까 몇 % 올리자. 이것보다 현재 상태의 去來實態, 이것이 가장 큰 基準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가마로 했던 것이고, 또 糧穀市場을 뭐 이런 去來基準을 둘 필요 없이 400가마 취급하든, 100가마 취급하든 또 1,000가마 취급하든 자율화 시켜라,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政府가 이런 막대한 投資를 해서 糧穀都賣市場을 建設했을 때는 이 都賣市場을 통해서 糧穀을 적절하게 供給을 해 주고 또 價格을 調整하기 위해서 이런 都賣市場을 建設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糧穀都賣市場을 活性化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去來基準量도 적정하게 策定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85年 당시에 500가마로 되어 있던 것을 그 동안 한번도 이것을 改正하지 않고 이제와서 이것을 취급한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檢討해서 가지고 糧穀都賣市場의 活性化에 배치되지 않도록 신중히 檢討해서 決定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네, 崔浩 委員님 말씀하세요.

○崔浩 委員; 아까 李元局 委員이나 申龍吉 委員께서 우리가 處理된 부분이 이제 4月 22日날 우리가 條例를 決定을 했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本

委員으로서는 法이 현재 이것이 施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600가마로 그대로 줬을 때는 163名 中에서 많은 人員數가 지금 脫落이 되는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月 22日날 通過된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은 날짜에 관계없이 當 委員會에서 속히 이것은 修正을 해드려야만 실제 거기에 從事하는 분들에 대해서 被害가 다소나마 더 적을 것으로 思料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原案대로 通過를 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要求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討論하실 委員님 계시면..... 네, 金昌學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昌學 委員; 金昌學 委員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月 22日 改正한 이후에 163名 組合長 中에서 소정의 600가마를 實績 올리지 못해 가지고 탈락이 되어서 行政處罰을 받은 組合長이 있습니까?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600가마를 취급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金昌學 委員; 아니, 3個月 연속해서 탈락된, 行政措置를 받은..... 없습니까?

○産業經濟局長 金東勳; 네.

○金昌學 委員; 그것이 없다고 보면 저 역시도 李元局 委員님 말씀대로 이것이 4月 22日 改正되었고 불과 4個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의 우리 委員會의 모든 處理過程의 公信力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봐서 次期會議에 그 案을 좀더 여기에 심도 깊은 모든 檢討를 하고 그 調査를 또 하고 해서 次期會議에 진지한 意見討論을 해서 處理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李元局 委員님

의 말씀에 同意를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네, 金昌學 委員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討論할 委員님 계시면.....

○金成奐 委員; 金成奐 委員입니다, 局長님 말씀도 잘 듣고, 또 組合長님 말씀도 들었는데요. 제가 常識線으로써 理解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얼마 前 今年 4月 22日 우리가 條例案을 改正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同僚委員 한 분이 500萬원에 600가마로 많이 上向 조정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85年度 9月 10日로 봐서 500萬원을 우리가 가마 數로 換算을 하면 600가마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가 않습니다. 그 때는 아마 쌀 한 가마가 6·7萬원밖에 안될 것이고 지금은 10萬원이 넘으니까 숫자적으로 우리가 上向調整한 것이 아니고, 또 아까 手數料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마 당 500원 내지 1,000원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400萬원으로 할 적에 20萬원이라면 우리가 仲買人이 163名으로 볼 적에 한 달에 20萬원 내지 30萬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또 任意的으로 條例를 고쳐 가지고서 한다고 할 적에 163名이 앞으로 生計에 있어서 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이 분들이 우리 仲買人을 또 보호하는 次元, 또 나아가서는 流通秩序를 좀더 활성화 하는 立場에서 이것을 지금 또 다시 下向調整한다는 것은 과정이나 현실적으로 봐서 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시정한 것도 불과 4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改正할 문제가 아니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金成奐 委員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른 委員, 丁鎭 委員님 말씀하세요.

○丁鎭 委員; 丁鎭 委員입니다. 방금 金成奐 委員께서 말씀하셨는데 85年 당시에 쌀 한가마니에 아까 6萬 2,000 얼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500萬원이라면 9가마니면 500萬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600가마로 되어 있습니다. 9가마니하고 600가마니입니다. 물론 市當局에서 지금 현재의 去來量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農村出身입니다만 여기서 糧穀市場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지금 農村을 살리자. 살리자 하면서 各處에서 내 고향 쌀을 사달라고 郡民會, 面民會, 道民會 열어 가지고 서로 내 쌀, 우리 고향 쌀을 사달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UR 대비해서 또한 中國에서 마구 農産物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쌀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쌀도 우리 道民의 쌀을 팔아 달라, 우리 郡民의 쌀을 팔아 달라, 우리 面民의 쌀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난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양곡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農村이 더 침체되는, 農民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라도 서울市內에 農民과 消費者 直去來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양곡市場을 너무 활성화한다는 자체도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400가마라고 해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400가마 原案대로해서 通過해 주는 것이 오히려 農村을 살리고 都農間에 實利도 되고 이런 분위기에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討論이 아주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 안 하신 委員님이 계시면 한 말씀 하셔도 좋고 가능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지

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기 意見을 抑制해 주셔도
다 委員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討論하실 委
員님 계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崔浩 委員님
.....

○崔浩 委員; 여러 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번 4月 22
日 제 個人的인 얘기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市議員되고
얼마 안 되어 이런 審議를 할 당시에 그 숫자를 봤을 때 500
萬원을 600萬원으로 봤습니다, 崔浩 個人은..... 그래서 20%
정도 上向되는 것은 별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얘기를 해서
그것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本 委員
會에서 아마 500萬원을 600가마니로 본 委員이, 몇 분이나
계실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또 잘못된 부분은 빨리 是
正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法이라는 것은
지금 施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金昌學 委員께서 處罰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금 處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일이 지나고 나서 3個月이면 1期分, 1期分
지나고 난 후에 審査를 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 빨리 이것을 處理해 주지 않으면 不利益을 당하는 商人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누구의 責任이나, 本 委員會에서
責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法이 流行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쌀
장사도 아닙니다만,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항상 公務員이나
보면 法으로 정해 놓으면 한번 정해 놓은 것이니까 밀어붙여
보자,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是正을 해 줘야 被害者가 안 생기는 것입
니다. 왜 留保를 합니까?

단, 오늘 이 會議에서 改議案件이 李元局 委員에 의해 나오

셨는데 改議가 成立이 되는지 안 되는지 委員長님 그 會議를 進行을 해 주시고 改議가 成立이 되면 正式表決에 부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崔 委員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討論하실 委員님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이 委員님이 하신 것을 또 이쪽 委員님이 받아서 하시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可能하면 抑制해 주시고, 討論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더 이상 討論하실 委員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司會者로서 봤을 적에 組合側 意見을 한 번만 더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組合長이 되었건 또 다른 분이 되었건 한 분만 나오셔서 우리 委員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몇 말씀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 李榮珪 組合長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저희가 請願을 낸 것은 現實에 맞도록 해달라고 사실은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 숫자가 600가마니 이상이 되었다 하는 部分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雜穀이 포함된 部分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 속에 놓여있는 그런 問題도 있습니다. 雜穀을 우리가 入札을 해서 팔 경우에 실지로 우리가 0.15를 먹습니다, 마진을. 그런데 그 現金은 所得稅標準率이 4.9%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問題 등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雜穀部分을 빼고 實質的인 쌀에 대한 部分을 말씀드린 것이오니 저희 163名의 仲買人組合 위해서 추호도 落伍者가 없도록 懸案을 현명하신 委員長님 이하 委員님께서 通過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말씀 잘 들었습니다.

○李元局 委員;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委員長代理 李基烈; 李元局 委員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李元局 委員; 請願人께서 말씀하신 內容을 충분히 本委員을 비롯해서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서울市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請願人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本 委員이 질문해서 아까 答辯도 받았습니다. 서울市側에서는 平均 1人 去來量이 雜穀을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請願人에서 말씀을 하셨고, 請願人은 현재 集荷物量이 163名에 대해서 450가마 정도나 500가마 미만이다, 集荷物量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도 本委員이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에 記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付託드릴 말씀은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조금 흥분이 되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500萬원을 600가마로 했을 때 모르고 그랬다 하는 委員님이 혹시 계시면 우리가 이런 것을 審議·議決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잘못을 認定하고 자아에 빠진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는 本委員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本委員은 당시에 분명히 500萬원이 600가마로 된 것을 알았습니다.

○崔浩 委員; 李元局 委員, 個人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내 個人的으로 얘기했어요. 내 個人이라고.....

○李元局 委員; 저도 個人입니다. 그리고 本委員 個人은 그 당시에 중매인의 去來量에 따라서 당시에 基準을 정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本委員이 확실히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잡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는 것을 本委員이 알았고 아마 우리 同僚委員들도 알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오늘 대단히 우리 同僚委員들, 또 더더군다나 제가 죄송한 것은 저희 生活環境委員會의 幹事이신 崔浩 委員님께서 紹介 委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400가마 미만도 될 수 있을 정도, 이제 資料를 確保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本委員이 다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다음 會期로 保留를 해 주는 것이 우리 紹介 委員이신 崔浩 委員님께도 상당히 체면이 서실 것으로도 보고, 또 우리 同僚委員들께서도 지난날을 생각했을 때 한 번 9月 다음 會期로 保留하는 것이, 留保하는 것이 어떠냐. 다시 한 번 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말씀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으로서 討論을 그만 하십사 하고 付託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委員님들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반복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討論하실 委員님 계시면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討論하실 委員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重要的 事案인 것 같기에 委員長이 잠깐 5分만 停會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停會를 宣言합니다. 5分입니다. 정확하게 12時 10分에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2時 05分 會議中止)

(12時 27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基烈; 그러면 다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계속해서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崔浩 委員님.

○崔浩 委員;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現 原案을 撤回을 하고 다음 臨時會로 넘길 것을 動議합니다. 따라서 다음 臨時會 안에 小 委員會를 構成을 해서 다시 엄밀한 調査를 해서 다음 會期에 處理가 될 수 있도록 留保할 것을 提案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수고하셨습니다. 崔浩 委員님께서 다음 會期로 留保하고 小委員會를 構成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小委員會의 構成에 대해서 말씀하실 委員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李元局 委員님.

○李元局 委員; 小委員會 構成人員을 本委員은 崔浩 委員님, 金成奐 委員님, 申龍吉 委員님, 그리고 權赫柱 委員님 그리고 本委員을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構成하기로 動議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말씀 잘 들었습니다. 小委員會 構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委員님 계시면 또 말씀하세요.

네, 丁鎭 委員님.

○丁鎭 委員; 李元局 委員님의 提案에 同意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基烈; 丁鎭 委員님께서 李元局 委員님 提案에 同意하셨습니다.

그 외 小委員會 構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委員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崔浩 委員님께서 다음 會期로 案件을 留保하여 小委員會를 構成하자고 말씀하셨고, 李元局 委員님께서 崔浩 委員님, 李元局 委員님, 申龍吉 委員님, 權赫柱 委員님, 金成奐 委員님, 이렇게 다섯 분으

로 小委員會를 構成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역시 丁鎭 委員께서 李元局 委員님의 小委 構成에 同意를 하셨습니다.

그 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本 案件을 通過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本 案件, 즉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改正에따른請願審査 件에 대해서 다음 會期로 留保할 것을, 그리고 小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通過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議案을 말씀드리면 잠시 후에 西大門 獨立公園을 訪問하고, 또 盆唐 韓國地域煖房公社 本社를 訪問하고, '92世界造景家協會 韓國總會歡迎宴에 會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會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31分 散會)

○出席委員

崔浩 李基烈 李元局

金成奐 李永輔 權赫柱

丁鎭 申龍吉 金昌學

○專門委員

成泰辰

○出席公務員

産業經濟局

局長 金東勳

糧政係長 吳巖

○其他參席者

大韓糧穀仲買人組合長 李榮珪